

이슈페이퍼 2018-03

다문화 한부모 육아지원 개선방안

권미경

1. 배경 및 문제점
2. 다문화 한부모 가족 현황
3. 다문화 한부모 지원정책 현황
4. 다문화 한부모 가족특성에 따른 양육지원 요구
5. 다문화 한부모 육아지원 개선방안

참고문헌

다문화 한부모 육아지원 개선방안*

권미경 부연구위원

| 요약 |

- 다문화 한부모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가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그 자녀들의 건강한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임.
- 현재 다문화 한부모 가족의 지원정책은 다문화 지원정책과 한부모 지원정책에 근거하며 두 정책의 교집합 부분으로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 다문화 한부모 가족의 요구는 자녀와 함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 기초생활비 지원 같은 생활비용의 지급을 넘어서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자녀 돌봄의 문제의 지원(영유아 자녀), 학업지원에의 문제의 지원(학령기 자녀)으로 수렴됨.
- 다문화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의 방안은 성장하는 아동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 다문화 한부모 어머니 역량 강화, 운영 중인 다문화 한부모 지원 제도 운용 효율성 제고라는 틀을 중심으로 구체화함.

1 배경 및 문제점

- 다문화 한부모 가족이 증가하고 있고, 그 안에 성장하는 자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 다문화가족 지원 현장에서 이혼, 사별 등을 이유로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정책은 초보적인 수준임.
 - 다문화 배경과 한부모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을 지닌 가족 상황에서도 자녀들은 성장하고 있고, 시간이 지남 이후 그 과정을 돌이킬 수는 없으므로 다문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시의적절한 지원이 필요함.

* 본 원고는 「권미경·이재희·최인화(2017).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육아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함.

- 다문화 지원정책 중 사각지대로 보이는 다문화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의 구체화가 필요함.
 - 배경이나 신분과 관계없이 아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는 내용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음.
 - 다문화 한부모 가정에서 부모의 상황으로 인해 성장기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함.
- 다문화 한부모 현황과 양육 실태를 통계분석과 심층면담의 방법으로 파악하고 지원 요구를 수렴하여,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가족의 건강한 양육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다문화 한부모 가족 현황1)

- 다문화 결혼은 최근 9년간 감소 추세에 있으며 전체 결혼에서 다문화 결혼 비중이 2008년 11.2%를 정점으로 2016년도에 7.7%임.

표 1 | 다문화 결혼 건수 및 전체 혼인 중 다문화 비중(2014~2016)

단위: 건, %

	전체			다문화 혼인			한국인 간 혼인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혼인 건수	305,507	302,828	281,635	24,387	22,462	21,709	281,120	280,366	259,926	
(비중)	(100.0)	(100.0)	(100.0)	(8.0)	(7.4)	(7.7)	(92.0)	(92.6)	(92.3)	
전년비	증 감	-17,300	-2,679	-21,193	-2,561	-1,925	-753	-14,739	-754	-20,440
	증감률	-5.4	-0.9	-7.0	-9.5	-7.9	-3.4	-5.0	-0.3	-7.3

주: 1) 다문화 혼인: 남녀 모두 또는 어느 한쪽이라도 외국인 또는 귀화자인 경우

2) 출생기준 한국인 간의 혼인: 남녀 모두 출생기준 한국인인 경우

자료: 통계청(2017). 2016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p. 4

1) 본 장은 「통계청(2017). 2016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와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 2015년 전국다문화 가족실태조사」결과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 다문화 가구는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결합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았고, 다문화 가구 남편의 초혼연령(36세)이 한국인 간 혼인(32.6세)에 비해 높은 반면, 아내의 초혼연령(27.8세)은 한국인 간 혼인(30.3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자료: 통계청(2017). 2016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p. 8.

[그림 1] 평균 결혼 연령(2016)

- 결혼 비중 감소와 함께 전체 이혼 건수 중 다문화 이혼 건수도 최근 9년간 감소하였으나 2016년도 전체 결혼 중 다문화 비중이 7.7%인 것에 비해 전체 이혼 중 다문화 비중이 9.9%로, 결혼 건수 대비 이혼 수가 한국인 간 이혼 보다 높음.

표 2 | 다문화 이혼 건수 및 전체 이혼 중 다문화 비중(2014~2016)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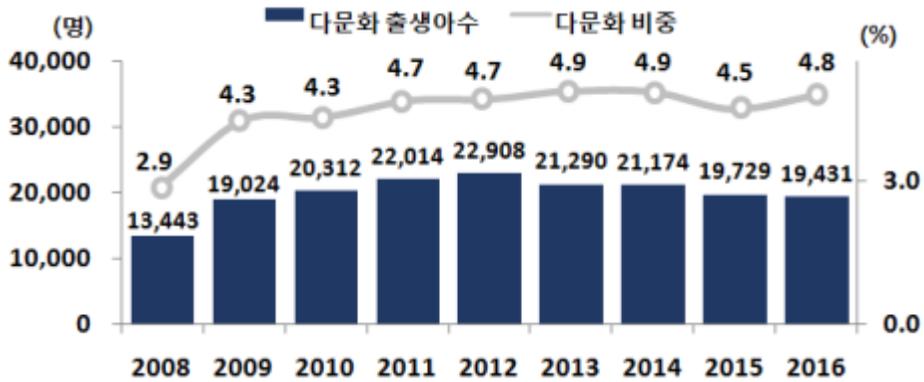
	전체			다문화 이혼			한국인(출생기준)간 이혼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이혼 건수	115,510	109,153	107,328	12,902	11,287	10,631	102,608	97,866	96,697	
(비중)	(100.0)	(100.0)	(100.0)	(11.2)	(10.3)	(9.9)	(88.8)	(89.7)	(90.1)	
전년비	증 감	218	-6,357	-1,825	-580	-1,615	-656	798	-4,742	-1,169
	증감률	0.2	-5.5	-1.7	-4.3	-12.5	-5.8	0.8	-4.6	-1.2

주: 1) 다문화 이혼 : 남녀 모두 또는 어느 한쪽이라도 외국인 또는 귀화자인 경우

2) 출생기준 한국인 간의 이혼 : 남녀 모두 출생기준 한국인인 경우

자료: 통계청(2017). 2016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p.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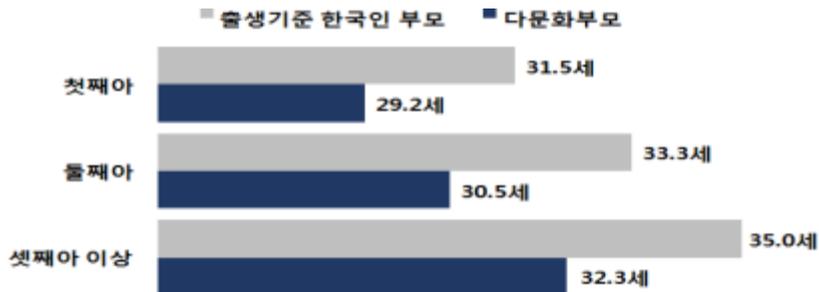
- 다문화 출산 수는 감소하였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인 간 결혼에서 출산 수치보다 감소 폭이 많지 않아 출생아 수 비율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체출생아 중 다문화 비중은 2008년에 2.9%에서 2016년도에 4.8%로 크게 증가함.



자료: 통계청(2017). 2016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p. 22

[그림 2] 다문화 출생아 수 및 전체 출생 중 다문화 비중 추이(2016)

- 출생순위별 모의 평균 출산연령을 중심으로 보면, 첫째아의 경우 다문화 어머니 29.2세, 한국인 어머니 31.5세, 둘째아는 다문화 어머니 30.5세, 한국인 어머니 33.2세, 셋째아는 다문화 어머니 32.3세, 한국인 어머니 35.0세로, 다문화 어머니 출산 연령이 낮고, 출산 간격이 짧음.



자료: 통계청(2017). 2016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p. 26

[그림 3] 출산순위별 모 평균 출산 연령(2016)

3 다문화 한부모 지원정책 현황

- 다문화 한부모 가족의 지원정책은 다문화 지원정책과 한부모 지원정책에 근거하여 지원정책의 교집합 부분으로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법적 기초인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제정되었고, 주요 내용에는 현재 지원정책의 내용이 담겨있고 이는 다음 <표 3>과 같음.

표 3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내용

구분	내용
다문화가족지원 기본계획	제3조 2항 여성가족부 장관이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제3조 4항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둠.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제4조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함.
다문화가족 이해증진	제5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조치를 해야 함.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 교육·훈련 및 한국어교육 등 지원함 -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을 지원하고 비용도 차등 지원 - 결혼이민자들의 배우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교육 등 사회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신설 2015.12.1.>
가족관계를 위한 조치	제7조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모 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추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보호·지원할 수 있음. -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함. -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 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안 됨. -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학과 외

구분	내용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 -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 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 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기관의 장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
	제14조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적용
다국어 서비스 제공	제11조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국어를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제11조 2항 - 다국어를 의한 상담·통역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와 통합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관련 공무원 교육	제13조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다문화가족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전문인력양성	제13조 2항 다문화가족지원 및 다문화 이해교육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해야 함.
민간단체 지원	제16조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주: 관련 법령을 본 연구에서 정리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법령/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2017년 12월 8일 인출함.

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근간이 되는 것은 2007년 모·부자복지법에서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여성가족부, 2017a: 11)으로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여성가족부, 2017a: 470). 주요내용에는 현재 지원정책의 내용이 담겨 있음(표 4 참조).

표 4 | 한부모가족지원법 주요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자	제4조, 제5조 한부모가족은 모(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로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함.
	제5조 2항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4.1.21.>
실태조사	제6조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함.
관련 공무원 교육	제6조2항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단체 지원	제9조 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 지원할 수 있음.
지원대상자 조사	제10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회 이상 관할구역 지원대상자의 가족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함
복지급여신청	제11조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복지급여내용	제12조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복지 자금의 대여	제13조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1. 사업에 필요한 자금 2. 아동교육비 3. 의료비 4. 주택자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 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고용의 촉진	제14조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용지원 연계	제14조2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 및 기관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간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가족지원서비스	제17조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4.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자녀양육비 이행지원	제17조3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이 이혼 판결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분		내용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제17조5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주택의 분양 임대	제18조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설설치	제20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주: 관련 법령을 본 연구에서 정리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lsEfnfoP.do?lsiSeq=150441/법령/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2017년 12월 8일 인출함.

다. 다문화 한부모 지원 전달체계 및 지원서비스

- 다문화 한부모의 경우,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라는 특성으로 인해 안정된 생활 및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체계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신규사례 대상가구 발굴, 멘토링 제공, 방문지도사 연계, 생활설계, 정서 지원, 사회·정책 정보제공 등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함. 두 기관에 종사하는 다문화사례관리사, 다문화생활관리사, 한부모가정지원 생활코디네이터 등의 업무를 중심으로 다문화한부모 지원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음.

표 5 | 다문화 한부모 지원 내용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한부모가정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구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정지원센터
	다문화사례관리사 (5일제)	다문화생활관리사 다문화사례관리사 (4일제)	멘토	한부모가정지원 생활코디네이터
소속 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0개소, 50명 건가다가센터 93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6개소, 56명 106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가다가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주요 업무	-1인당 연간 누적 25 사례 이상 신규사례 대상가구 발굴	-1인당 연간 누적 15사 례 이상 발굴 -멘토링 운영관리, -방문지도사 연계사업	초기 결혼이민자 - 정서적지지 - 돌봄 등 - 1:1 멘토링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한국에 서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통합 기여	초기 한부모가정의 - 자립의지 고취 - 동기부여 - 생활설계 - 정서 지원 - 사회·정책 정보제공

구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정지원센터
	다문화사례관리사 (5일제)	다문화생활관리사 다문화사례관리사 (4일제)	멘토	한부모가정지원 생활코디네이터
사례 관리 대상	- 위기가구 (가족폭력, 이혼, 자살(시도), 재난 등 경험) - 일반·통합가구		1인당 총 5~10회 실시	1인당 8회 사례: 다문화 한부모: 5~8명,
업무 빈도	주5일	주4일	멘토링 프로그램 : 5회~10회	1인당 평균 8회기(최대 40회기)
보수	28,500천원(연)	20,000천원(연)	25,000원(회)	35,000원(회)
자격 기준	-관련학과 석사학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2년 이상		- 국내거주 1년 이상인 결혼이민자 - 한국어 구사 - 모범적인 가정생활 유지	- 기본과정교육 10:00~17:00 - 전문과정교육 10:00~18:00

자료: 1)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2017). 2017 한부모 조기자립을 위한 매뉴얼. p.29,
 2) 여성가족부(2017b). 2017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안내(II) 부록. pp.397, 401, 406~407.
 3) 「권미경·이재희·최인화(2017).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육아지원방안. 육아정책연구소」연구에서 수행된 1차 전문가 자문회의(2017년 9월 21일 실시)를 토대로 재구성함.

- 한부모가족이 소송 등에 휘말려 법과 관련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할 때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저소득 다문화 한부모일 경우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주거비 지원을 받아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많아지고, 임대주택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정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함.
- 저소득 다문화 한부모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공공부조 외에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급여를 통해 지원되고 있음.
- 한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 긴급한 상황에 일시 돌봄,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전반적인 생활도움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약위기가족 지원과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종일제와 시간제 아이돌보미서비스 그리고 0세(임산부)~만12세(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이 있음.
- 자립 의지를 가진 다문화 한부모에게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취업성공패키지 등과 연계한 직업훈련과 일자리 연계가 지원되고 있음.

4 다문화 한부모 가족특성에 따른 양육지원 요구

-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15인의 면담내용을 통해 결혼, 이혼과 사별 등 한부모가 된 과정과 국적 취득 문제, 거주, 경제적 문제, 자녀양육의 문제, 지원 이용의 어려움 등을 파악함.
- 결혼, 이혼 또는 사별
 - 한부모가 되게 된 과정 또는 원인은 그 이후 어머니와 자녀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결혼 생활 중의 경험은 이혼인지 사별인지에 따라 대체로 차이를 보임.
 - 사별한 경우는 남편에 대해 긍정적 추억을 이야기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혼한 경우는 부정적 경험이 상처로 남은 경우가 많았고, 특히 가정불화 기간 동안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학대를 곁에서 본 경우 자녀들이 어머니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양육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꼽았음.
 - 어머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불평등한 이혼의 과정을 겪는 경우도 있었고, 사별 뒤 에라도 재산의 분배가 공평하지 않아 경제적 빈곤으로 연결되는 양상을 보임.
 - 남편의 원가족과의 관계는 가족에 따라 달랐고, 이혼한 경우 자녀와 아버지와의 만남이 지속되기도 함.
- 국적 취득/귀화 관련 문제
 - 국적의 취득은 최저생계비, 임대주택 등 각종 한부모 지원과 연계되므로 다문화 배경을 지닌 어머니들에게 국적의 취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님.
 - 국적 미취득 한부모 가정은 현재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므로 국적의 취득을 도울 수 있는 다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주거 및 공간 문제
 - 자녀와 함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는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 중 하나임.
 - 다문화 한부모 가족을 위해 임시 지원 방안으로 쉼터가 제공되고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에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하지만 국적문제 등으로 이러한 정책의 접근이 쉽

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

- 국적 미취득 상황에서의 주거 공간 지원이 필요함.

□ 경제적 문제

-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들은 대부분 이혼 사별 이후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았음.
- 직장을 갖고 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기초생활비 수급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 지원 또한 국적과 연계되어 있어 국적 미취득의 경우 제외됨.
- 이혼의 경우라도 양육비 추심이 어렵고 이혼 과정에서 이를 포기하게 된 경우도 많았음.
- 그럼에도 자녀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았고, 사교육 이용 기회 확대를 희망하기도 함.

□ 자녀양육과정의 어려움

- 자녀양육과정에서 문제는 무엇보다 어머니 혼자 양육하는 어려움으로 요약됨.
- 자녀와의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하여야하며, 일반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힘든 상황이며, 친인척이 가까이 없어서 양육지원을 받기도 어려우며, 특히 아프거나 긴급 상황 발생 시 갑자기 맡길 곳이 없음.
- 자녀들은 어머니 양육 상황에서 아버지의 부재감을 경험하기도 함.
- 자녀를 데리고 일하기 힘든 경우에는 자녀를 취학 전 일정시기 동안 모국에 보내어 양육하기도 함. 그러나 자녀가 중도입국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적응이 수월하지 않은 문제를 지님.
- 모국에서 자녀양육에 도움 받기 위해 친정어머니를 초대하기도 함.
- 자녀와 함께 있지만 어머니 스스로는 외로움을 경험함.
- 자녀의 기관이용이나 학교생활 시 따돌림을 당하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까 염려하며 자녀의 또래 관계, 학업 등에 관심이 높음.

□ 자녀양육 시 강점과 약점

- 다문화 한부모 어머니들에게 양육자로서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함.
- 강점으로는 다문화 배경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열심히 사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들었음.
- 자녀의 또래 관계형성과 사회성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어머니가 먼저 주도적으로 직장에서 동료나 자녀의 학교에서 어머니들과 사귀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강점이라고도 함.
-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한다고 함.
-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녀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부분과 어머니 외 자녀가 경험할 수 있는 가족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부족한 점으로 인지함.
- 다문화 한부모 어머니들은 스스로 인지하는 양육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조집단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양육도 서로 지원하며, 자녀의 또래 친구 어머니들과 유대를 형성하여 양육 도움을 받기도 하였음.

□ 지원제도 이용

- 한국은 지원제도가 많아 한부모가 자녀를 기르기에 어머니 본인의 모국보다 낫다고 평가하는 경향을 보임.
-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어머니들은 이용 가능한 지원책을 활용하고자 노력하며, 자조모임 등을 통하여 정보를 활발하게 공유하고 있었음.
- 자녀를 위해서는 방문교사제도와 학교 급식제도에 대한 만족이 높음.
- 다문화 한부모들의 제도 활용의 편차가 큼을 고려할 때, 상황에 적절한 정보의 접근, 지원 및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머니 스스로 정보와 지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다문화 배경을 지닌 여성이기 때문에 불평등한 이혼 상황과 사별 후 재산 분배의 과정이 어머니들에게 불리하고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결되는 양상을 확인함.

- 다문화 배경을 지닌 어머니들에게 국적 취득은 지원정책과 연계되는 중요한 문제이나 그 과정이 수월하지 않음.
 - 한국어 교육, 귀화준비 교육 등이 지원되고 있으나, 서류 준비나 은행 잔고 확보 등에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음. 다문화지원센터 등에서 이러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 한부모가 자녀와 함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의 마련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이 국적 취득 후 지원 가능하므로 국적의 취득을 돕는 것이 우선 필요한 과정으로 고려됨.

5 ▶ 다문화 한부모 육아지원 개선방안

- 연구 결과를 통해 다문화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의 개선방향을 아동, 어머니, 정책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첫째, 무엇보다 다문화 한부모 가족 안에서 자라는 아동에 초점을 두고 건강한 국민으로의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야 함.
 - 가정의 상황이 어떠한건 그 안에서 자녀는 성장하고, 시간이 지난 이후 그 과정을 돌이킬 수는 없고 이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한 이유임.
 - 둘째, 다문화 한부모 가족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어머니 역량 강화에 초점 두어야 함.
 - 어머니 스스로 양육자로서의 역량을 낮게 인지하고 있는 다문화 한부모 어머니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보완되어야 함.
 - 셋째, 다문화 한부모 가족을 지원 중인 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두어야 함.

정책 방향	지원방안
다문화 한부모 가족 안에 성장하는 아동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제공	-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 자녀양육 기간 동안 기초생활 지원 - 자녀를 위한 학습지원
다문화 한부모 가족 어머니 역량 강화	- 예방적 접근으로의 상담, 학습기회 확대 - 원스톱 정보제공 및 안내 - 지원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제공 - 사회적 네트워크/자조모임 등 연계 강화
다문화 한부모 지원 제도 및 정책의 효율성 제고	- 법적 제도적 정비 - 지자체 중심 정책안내 - 전달체계 역할과 업무 분장 명료화 - 다문화 한부모 현황 자료구축

[그림 4] 다문화 한부모를 위한 지원정책 개선방향 및 방안

가. 성장하는 아동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

- 주거 지원을 위해 임시 공간 제공과 임대주택 우선순위 부여
 - 갑작스럽게 한부모가 된 상황의 경우 임시 주거공간 지원이 필요함. 현재,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 다문화 한부모는 자신의 가족 유형에 맞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으나 입소 가능한 가구 수는 전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동생활지원형에 해당하는 디딤터 경우에는 주거 제공은 물론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하나, 그 외에 자녀양육 교육, 인성교육, 상담지도 등의 지원확대가 필요함.
- 자녀양육 기간 동안 다문화 한부모의 한국 국적 인정
 - 다문화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지닌 아동의 양육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언함.
 - 경제적 어려움은 대부분의 다문화 한부모들이 직면한 문제이나 어머니가 한국인이 아닌 경우에는 기초생계비 수급이 어렵고 자녀에게만 지원됨.
 - 성장하는 아동을 지원한다는 맥락에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국적 미취득 어머니에게 한시적인 한국인 지위를 부여하여 기초생활수급, 주거지원 등 지원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하자는 것임.

□ 자녀를 위한 학습지원 강화

- 현재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한 학습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족생활지도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1:1로 만 3세~12세 이하 초등학생 자녀의 학업 및 사회정서발달을 지원하는 서비스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만족도도 높으나 지원내용 및 기회 확대에의 요구가 높음.
- 향후 유사 기회 확대를 위해 지자체 주도로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등과 연계하여 다문화 한부모 가정 자녀 학습지원을 넓히는 방안을 고려함.
- 교육부에서 농어촌지역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학습지원을 위해 대학생 멘토링을 실시하고 대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데 이를 도시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함.

나. 다문화 한부모 어머니 역량 강화

□ 예방적 차원의 상담 및 학습기회 확대

- 무엇보다 다문화 배경 어머니의 역량을 강화하여 다문화 가족에서 한부모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가는 노력을 선행하여야 함.
- 가장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한부모 가정이 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할 때 남은 가족들이 그 심리적 충격을 해결할 수 있는 심리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사별로 인한 부분은 예외로 하고라도, 다문화가족에서 흔히 발생하는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 자녀 양육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가족 간 갈등, 가정폭력까지 문제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담이나 한국어 교육, 자녀양육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줄여갈 수 있음.

□ 원스톱 정보 제공

- 한부모가 된 경황없고 어찌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도움처를 찾을 때 지원제도와 연결하기 위한 정보 제공 및 연계 핫라인 구성을 제안함.
- 이는 서울시에서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우리동네 보육반장’의 개념을 다문화 한부모 가족으로 차용하는 방안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 마련 및 강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운용 중이나 이 중 한부모 가족을 위한 것은 찾아보기 쉽지 않음.
- 다문화 한부모 가구의 사례를 관리할 경우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에게는 일반가구 대비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센터의 평가지표와 다문화 한부모 가구 지원서비스 정도를 연계하는 제도 마련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

- 직장 동료, 이웃 주민, 자녀의 학교 학부모 등 한국인과의 멘토-멘티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함.
- 특히 자녀양육 시기에 자녀가 재원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등에서 또래 친구 부모들과 연계 형성은 자녀의 학교적응과 어머니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연수 시 다문화 한부모 가족 지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교육내용의 일부로 포함시킴으로써 교사가 다문화 한부모의 자녀양육에 있어서 지원체계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 자조모임 활성화

- 비슷한 경험과 어려움 지닌 경우 상호지원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자조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자조모임을 비영리단체로 지정하거나, 법인화하는 등 법적 단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함.

다. 다문화 한부모 지원 제도 운용 효율성 제고

□ 법적 제도적 정비

- 이혼하는 과정에서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 즉, 이혼과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혼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지금까지 다문화 한부모의 이혼이나 법률 분쟁과 관련하여 나타났던 중점 사례들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법적 대응책을 법률적 지원서비스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지자체 정책 숙지와 담당 업무분담, 정확한 안내가 필요

- 지자체의 특성을 살린 사업들이 개발 확대되면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고,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도 지자체 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기도 하므로 정책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함.
- 다문화 한부모 지원과 관련한 문의도 다누리콜센터 등에서 다국어를 통해 서비스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함.

□ 다문화 한부모 지원정책 안내 매뉴얼 개발 및 배포

- 현재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정책 매뉴얼은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발간한 것이 있으나 한국인 한부모를 주 대상으로 만들어짐.
-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다누리 서포터즈’를 통하여 신규제작 콘텐츠 감수, 번역내용 확인 및 개선에 대한 건의를 받는다고 하므로 ‘다누리 서포터즈’에 역량 있는 다문화 한부모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지원정책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통합센터로 운영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통합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전반적인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으나 다문화 한부모가 지닌 국적 미취득, 언어제약 등의 취약부분으로 인해 통합된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나 한부모 가족 지원서비스로의 접근과 이용에 한계가 있음.
- 다문화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한부모 가족지원사업에서는 한부모가정지원생활코디네이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사례관리사와 다문화생활지도사 그리고 결혼이민자 멘토링까지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다문화 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서로 다른 서비스전달체계 간의 연계가 필요함.
-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나, 한부모 가족 지원정책에서 소수의 주변지대, 사각지대로 남는 한부모를 위해 보다 섬세한 정책 접근이 필요함.

□ 지원정책에 접근 못하는 다문화 한부모 사각지대 해소 필요

- 지자체 주민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자조모임 등에 나아와 도움을 청하는 경우는 이미 지원정책의 수혜 가능성이 높아짐.
- 지원의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며, 숨은 정책수요자와의 접점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전입 신고하는 때를 활용할 수 있음. 전입신고 시 다문화 지원관련 정책을 push service의 형태로 제공받는 데에 동의를 얻어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것임.

□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현황 파악

-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는 다문화 배경 여부가 변인으로 들어있지 않아 다문화 한부모는 자료화되지 못하고 있음.
- 전국다문화가구실태조사에는 혼인상태를 통해 한부모 현황에 대한 부분적 파악이 가능하나 자녀양육 중인 다문화 한부모 비중이 높지 않고 조사내용에 자녀 관련 요인에 대한 부분이 부족함.
- 다문화 한부모의 경우 자녀양육과정에서 경험되는 어려움이 가장 취약한 부분임을 고려할 때 향후 전국다문화가구실태조사 시에는 다문화 한부모의 비중을 다소 과표 집하고 자녀 관련 요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Ⅰ 참고문헌 Ⅰ

- 권미경·이재희·최인화(2017).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육아지원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2017). 2017 한부모 조기자립을 위한 매뉴얼.
여성가족부(2017a). 2017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2017b). 2017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안내(II) 부록.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2&vwcd=MT_OTITLE&parmTabId=M_01_02(중앙행정기관>여성가족부>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2017년 12월 6일 인출함.
통계청(2017). 2016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참고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법령/다문화가족지원법> (인출일: 2017년 12월 8일)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50441/법령/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2017년 12월 8일 인출함.